

2025 조총환·양건 SPA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 정오표(초판)

[제1권]

p.174 ㉓ 4째줄

~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(규칙 제96조의2). ⇨ ~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(제200조의2 제2항 단서, 규칙 제96조의2).

p.197

문제 1번 해설 ㉓을 삭제하고, 아래 내용으로 대체

㉓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(제204조).

p.420

㉠㉡ 2째줄, ~(제253조 제4항) ⇨ ~(제253조 제4항: 2024.2.13. 신설)

p.421

판례7. 5째줄 우측 여백에 아래 내용을 추가

- 제253조 제4항의 신설에 따라 이제는 의미를 상실한 판례이다.

p.483

㉓ ㉠ 법인이~ 견해가 타당하다(판례) ⇨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언제를 당사자능력 소멸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, 피고사건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한 청산종료등기가 있더라도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며, 판례의 입장이다.

p.540

㉣ 3째, 4째줄 피의자신문조서 ⇨ 피의자신문조서

[제2권]

p.329

㉠ 법률상 가중·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란 누범·심신장애·중지미수 등과 같은 필요적 가중·감면의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~ ⇨ ㉡ 법률상 가중·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란 누범·중지미수 등과 같은 필요적 가중·감면의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~

p.348

(2) 재판의 확정시기

•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은 3일 경과로 확정 ⇨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은 7일 경과로 확정

p.352

③㉠ 5째줄 ~기판력은 발생하고 ⇨ ~기판력은 발생한다고~

p.390

판례3. 3째줄 ~원칙에 반다고~ ⇨ ~ 원칙에 반한다고~

p.502

지방검찰청/지청장

↓검사 공소제기

↓ (반드시 공소장 제출)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기소 불기소

⇓

지방검찰청/지청장

↓검사 공소제기 여부결정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기소 불기소

(반드시 공소장 제출)

p.512

문2 ④ ~ 공판기일에~ ⇨ ~ 공판기일을~